

「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·의료·생활상담 및 한국어교육,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 제고
-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시간·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

1) 사업위치 : 구미시 일원

2) 예 산 액 : 963백만원(도비 288, 시비 675)

3) 사업내용

- 외국인근로자의 노동·법률·의료·생활상담
- 외국인근로자의 긴급구호(숙식 제공 및 생필품 지원)
- 한국어교육, 문화체험, 교류행사 등

나. 추진근거

- 1)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6조(지원의 범위)
- 2)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14조(업무의 위탁)
- 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다. 위탁사무

- 1) 외국인근로자의 노동·법률·의료·생활상담
- 2) 외국인근로자의 긴급구호(숙식 제공 및 생필품 지원)
- 3) 한국어교육, 문화체험, 교류행사 등

라.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간)

※ 매년 위탁기관 공모 후 위수탁 협약 체결

마. 위탁조건

- 1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- 상담센터 :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상담실 등 확보
- 쉼터 : 사무공간 및 별도로 분리된 쉼터 공간 등 확보
- 센터장 1명, 상담원 1명 이상의 종사원을 갖추어야 함

※ 상담원 :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)

- 2) 최근 3년 이상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담센터, 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구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

가) 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

○ 구성 근거 :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

○ 구성 인원 : 6명 이상 15명 이하 (위원장 1 포함)

○ 위원 자격

-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·국·소장
-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
- 변호사·공인회계사·노무사·기술사·건축사·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
-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-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, 사회적경제 전문가
-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2) 평가내용 : 사업계획, 사업수행능력, 지역사회기여도 종합 심사
가) 평가항목(안)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
계		100
사업수행기관 적격성	▪ 법인설립 유무 ▪ 법인·단체의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또는 컴퓨터 운영실적(비영리법인 설립 일자)	20
사업수행기관 인력·시설	▪ 시설 보유 현황(사무실/상담실(컴퓨터) 구분 여부) ▪ 상담원 또는 사회복지 자격보유 현황 ▪ 종사원 중 상담국가 출신자 현황	30
사업계획 적정성 (정성평가)	▪ 사업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▪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▪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과 효율성	30
지역사회기여	▪ 외국인근로자 복지 관련 지역사회기여도 ▪ 유관기관·단체 네트워크 구축능력	20

3)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사. 성과평가결과[2022년 운영실적보고서 기준]

- 1) 외국인근로자 노동·의료·생활· 상담건수 목표(2,000건) 초과 달성(9,498건)
- 2) 외국인근로자 무료한국어 수업 횟수 목표(60회) 초과 달성(244회)

아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6조, 제14조,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에 의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들에게 각종 상담 및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외국인이 구미시민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들이 지역 경제발전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, 구미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나,
-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6조 관련 사업 추진 시 위탁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